# 2021년도 정기감사 계획서(안)

2021.

국토연구원

# 목 차

I . 기관 개요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1. 연혁1
2. 설립목적1
3. 주요기능2
4. 조직 및 인원3
5. 예산현황5
6. 감사조직 및 담당자5
7. 감사관련 규정 현황5
Ⅱ. 2021년도 감사 목표6
1. 감사업무 기본방침6
2. 정기감사 추진목표6
3. 정기감사 중점감사 사항6
Ⅲ. 감사대상 부서 및 업무8
Ⅳ. 감사반 구성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V. 감사방법 및 일정13
1. 서면감사13
2. 실지감사13
3. 감사대상 기간13
Ⅵ. 감사추진 절차14
Ⅷ.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이행 확인15
Ⅷ. 기타 정기감사에 필요한 사항1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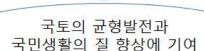
# □. 기관개요

### 1 연 혁

- 1978. 10. 「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」에 의거 개원
- 1981. 5.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통합
- 1994. 5. 연구원 자체청사 신축 이전 (안양시 평촌 소재)
- 1999. 1. 「정부출연(연)법」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
- 2007. 8. (부설)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
- 2010. 12. 글로벌개발협력센터(GDPC) 설립
- 2012. 8.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
- 2017. 1. 연구원 청사 신축이전(세종시 국책연구단지)
- 2019. 4. 균형발전지원센터 신설

## 2 설립목적

##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• 개발 •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



정관 제2조(목적)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·개발·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 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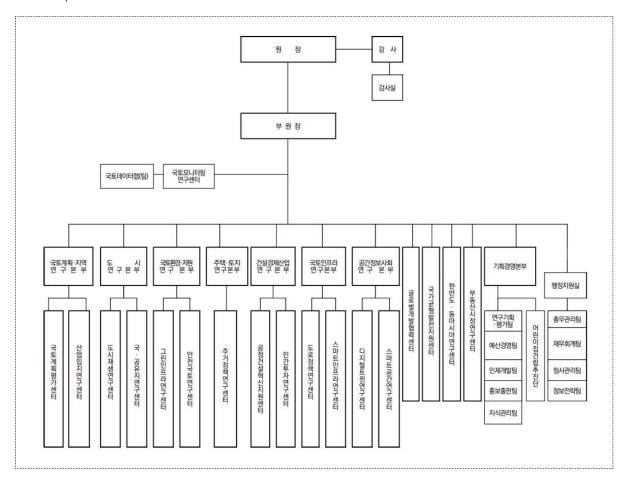
- 국토종합장기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연구 (개정 '99. 7. 23)
- 국토 이용·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(개정 '99. 7. 23)
- 토지, 주택, 도시 및 건설산업 등 국토관련분야 정책연구
-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종합연구 (개정 '99. 7. 23, 개정 '05. 1. 27)
- ㅇ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
- 건축도시공간 분야에 대한 연구 (신설 '07. 3. 9)
- 지방자치단체·국내외 연구기관·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사업(개정 '99. 7. 23)
- 정부·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의 연구용역 수탁(개정 '99. 7. 23)
- 국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, 국내외 국토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위탁연수 (개정 '99. 7. 23)
- ㅇ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배포
- 제1호 부터 제10호 까지의 부대사업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(개정 '99. 7. 23)

## 조직 및 인원

#### □ 조 직

4

#### ㅇ 조직도



#### ㅇ 부서별 업무분장

부서명	업 무 분 장
국토계획·지역 연구본부	- 국토·지역계획 및 정책 - 수도권 정책 및 계획 - 지역경제 및 공간계량 분석 - 국토개발사업 경제성 분석 - 국토계획평가센터, 산업입지연구센터 운영 등
도시연구본부	- 국가 도시정책, 도시계획·설계 및 개발 - 도시권 정책 및 계획 - 도시문화 및 관광, 녹색도시 정책 및 계획 - 국·공유지연구센터, 도시재생연구센터 운영 등

부서명	업 무 분 장
국토환경·자원 연구본부	- 국토환경·자원 정책 - 그린인프라연구센터 운영 - 안전국토연구센터 운영 등
주택·토지 연구본부	- 국가 주택정책, 주거복지정책 - 주택수급 분석, 국가 토지정책 - 주거정책연구센터 운영 등
국토인프라 연구본부	- 국가 인프라 정책 - 토지이용융합 교통계획 - 도로정책연구센터,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운영 등
공간정보사회 연구본부	- 국가 공간정보정책 연구 - 위성영상 분석 및 활용 연구 - 디지털트윈연구센터, 스마트공간연구센터 운영 등
건설경제산업연구 본부	- 건설산업 및 건설경제 정책 -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, 민간투자연구센터 운영 등
글로벌개발 협력센터	- 국토개발 경험의 교육·전수, 개도국 국토계획 수립 지원 - 개도국 국토개발 컨설팅 등
국가균형발전지원 센터	- 국가균형발전 정책 연구 - 국가균형발전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-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관한 업무 등
한반도 · 동아시아 연구센터	- 한반도 및 북한지역 공간계획 - 접경지역 개발계획 등
부동산시장연구센터	-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연구 -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 등
국토모니터링연구 센터	- 국토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사업 - 지역개발 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사업 등
기획경영본부	- 연구기획 및 평가 업무 - 예산경영, 인재개발, 홍보출판, 어린이집건립추진단, 지식관리 - 총무관리, 재무회계, 청사관리, 정보전략 업무 등

# □ 인 원

(단위 : 명)

	현 원												
0101	계		정	구직		무기계약직				계약직			
임원 (박사) (박사)	(박사)	계 (박사)	연구직 (박사)	전문직 (박사)	지원직 (박사)	계 (박사)	연구직 (박사)	전문직 (박사)	지원직 (박사)	계 (박사)	연구직 (박사)	전문직 (박사)	지원직 (박사)
2*	351	164	140	-	24	95	44	-	51	92	80	-	12
(2)	(122)	(108)	(107)	-	(1)	(2)	(2)	-	-	(12)	(12)	-	-

- \* 상근 이사장 1인, 비상근 감사 1인
- \*\* 2021.1월말 기준 현원(인턴,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 제외)

# 예산현황

## □ 예산총괄표

#### <2021년도 수지예산 총괄표>

(단위:백만원)

		수	입						지	출	
구 분	2020* (A)	2021** (B)	증△감 (B-A)	%		구	분	2020* (A)	2021** (B)	증△감 (B-A)	0%
합 계	37,494	37,817	323	0.9		합	계	37,494	37,817	323	0.9
1. 정부출연금	20,513	21,365	852	4.3	1.	인 건	비	21,259	21,642	383	1.8
• 정부출연금 편성	20,722	21,365	643	3.1	2.	연구시	<b>사업비</b>	14,803	14,577	△226	△1.5
·정부출연금 대체	△209	_	209	-	3.	경상원	은영비	1,432	1,598	166	11.6
2. 자체수입	16,981	16,452	△529	△3.1	4.	시 설	비	_	_	_	-
• 수탁용역수입	16,373	15,900	△473	△2.9	5.	기	타	_	_	_	_
• 정부대행수입	-	_	-	-							
• 이자수입	143	176	33	23.1							
• 기타수입	256	376	120	46.9							
·청사보증금 및 매각잔액	-	-	-	-							
•인건비 출연금 대체	209	_	△209	-							
3. 전기이월금	-	_	_	-							
4. 차입금	_	_	_	_							

\* 2020년도 : 2019. 12월말 실행예산 기준 \*\* 2021년도 : 2020. 12월말 실행예산 기준

## **감사 조직 및 담당자**

6

○ 조 직 : 직제규정 제11조(조직) 제3항

○ 인 원 : 감사 및 감사실장 등 4인

## 감사관련 규정 현황

○내부감사규정<붙임 1> 참조

# Ⅱ. 2021년도 감사목표

## 1 감사업무 기본방침

-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운영의 합리화 구축
- 예산낭비 및 업무추진의 비효율 요소 발굴 개선
- 예방적 차원의 사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사전 차단
- 비합리적 규정 및 제도 등 개선방안 도출

## 2 정기감사 추진목표

- 연구사업의 추진 및 관리체계 적정성 확립
- 예산집행의 건전성·투명성 점검
-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체계 확립
- 윤리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청렴한 근무환경 조성

## 정기감사 중점감사 사항

#### □ 연구관련 사항

3

-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
- ㅇ 수탁연구 및 위탁연구과제의 적정수행 여부
- ㅇ 과제 결과물 발간 여부
- ㅇ 연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
- ㅇ 연구관련 및 지원사업 추진의 적정성

- ㅇ 연구보고서 발간 운영의 적정성
- 임직원 행동강령과 연계한 외부활동 운영의 적정성 여부(출강, 타 기관 용역 및 자문 등)

#### □ 행정관련 사항

- 예산편성/변경 및 집행의 적정성
- o 제 규정의 제정 및 개·폐의 타당성 여부
- 공사 및 용역(수·위탁 계약), 구매계약 체결의 적정성
- ㅇ 법인카드 사용처 및 집행 적정성
- 업무처리에 있어 제 규정의 준수 및 이행실태
- o 국내·외 출장관리 적정성
- ㅇ 복무 및 인사관리의 적정성
- ㅇ 시설 및 자산관리의 적정성

#### □ 기타 연구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- 대외활동 부적정(출강, 적정 신고여부)
- 국외출장 관리 소홀(출장복명서 연말 미처리 사례)
- 문서·자산관리 부적정(재물조사실시, 물품관리)
- 예산의 목적 외 사용(전용사유, 편성항목 목적에 맞는 집행여부)
- 예산 부당지출(가족수당지급기준 위반(등본 확인))
-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(마일리지 우선활용 기준 위반)
-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(차량운행일지 미작성)
- 계약관리 부적정(선금보증기간, 참여진 이력서 미징구, 기준단가 과다인정)
- ※ <u>국무조정실 출연(연) 감사 중점 사항임(유사·반복 지적 사례)</u>

# Ⅲ. 감사대상 부서 및 업무

## □ 감사대상 부서

○ 전 부서 : 연구본부 및 센터, GDPC, 기획경영본부, 지원부서 등

## □ 감사대상 업무

대상 부서명	감사대상 주요업무
연구본부	1.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 가. 국토·지역계획 및 정책 나. 수도권 정책 및 계획 다. 지역경제 및 공간계량 분석 라. 국토개발사업 경제성 분석 마. 국토계획평가센터 바. 산업입지연구센터  2. 도시연구본부 가. 국가 도시정책 나. 도시계획, 설계 및 개발 다. 도시권 정책 및 계획 라. 도시문화 및 관광 마. 녹색도시 정책 및 계획 바. 국・공유지연구센터 사. 도시재생연구센터 3. 국토환경·자원연구본부 가. 국토환경·자원정책 나. 그린인프라연구센터 다. 안전국토연구센터 다. 안전국토연구센터 4. 주택·토지연구본부 가. 국가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정책 나. 주택수급 분석 다. 국가 토지정책 라. 토지개발, 이용 및 계획제도 마. 주거정책연구센터

대상 부서명	감사대상 주요업무
	5.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가. 국가 인프라정책
	나. 토지이용융합 교통계획 다. 대중 및 녹색교통
	라. 철도망 및 물류 마. 도로정책연구센터 바.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
	6.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가. 디지털트윈연구센터 나. 스마트공간연구센터
	7.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
	가. 건설산업 및 건설경제 정책 나. 건설시장 분석 및 정책 다. 중소·중견건설기업 해외진출 지원 라.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마. 민간투자연구센터
	8.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가. 국토개발 경험의 교육·전수 나. 개도국 국토계획 수립 지원 다. 개도국 국토개발 컨설팅 라. 그 밖에 국제협력 연구 및 사업
	9.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가. 국가균형발전 정책 연구 나. 국가균형발전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다. 국가균형발전 정책 컨설팅 및 교육 라.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관한 업무 마.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 관련 업무
	10. 한반도·동아시아연구센터 가. 한반도 및 북한지역 공간계획 나. 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다. 접경지역 개발계획
	11.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가.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연구 나.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 다. 부동산시장 분석 모형·시스템 개발 및 관리 라. 부동산시장 통계 생산 및 관리

대상 부서명	감사대상 주요업무
	12.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가. 국토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사업 나. 지역개발 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사업 다. 국토 진단 및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라. 국토데이터랩(팀) 운영
	1. 연구기획평가팀 가. 연구과제 기획 및 조정 나. 연구과제 평가 및 관리 다. 연구인력 운영 및 성과관리 라. 협동 및 융복합 연구기획 및 관리 마. 기관장 경영목표 및 실천계획 수립·관리 바. 연구기관 평가 관련 업무  2. 예산경영팀
	가. 예산의 기획 및 편성운영 나. 정부출연금의 요구 및 관리 다. 민간출연금, 보조금 등 기금조성 계획 및 운영 라. 예산 관련 국회 및 대정부 업무 마. 국정감사 관련 업무
기획경영본부	3. 인재개발팀 가. 인사기획 및 경력관리 나. 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인력 채용 다. 성과관리 및 근무성적종합평정 라. 연봉 및 보상체계 관리 마. 직무교육 및 훈련 관련 업무 바. 복무관리
	4. 홍보출판팀 가. 대외협력 기획 및 관련 업무 나. 연구성과 홍보 다. 보도기획 및 언론관련 업무 라. 국토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마. 국토교육 관련 업무 바. 정부3.0 및 사업실명제 등 연구행정정보 공개 사.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아. 연구원 발간물 기획, 편집 및 발간
	5. 어린이집건립추진단 가. 어린이집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업무 나. 어린이집건립 설계 및 건축 업무 다. 어린이집건립 관련 제반 행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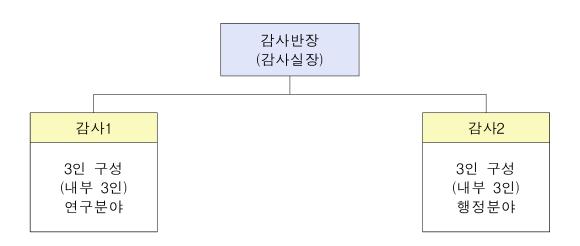
대상 부서명	감사대상 주요업무
	6. 지식관리팀 가. 도서관 및 전자도서관 운영 나. 국토연구 관련 자료 및 성과물 등 지적자산 관리 다. 국토연구원 기록물관리 업무
	1. 총무관리팀 가. 복리후생 나. 규정 및 문서관리 다. 보안관리 및 비상계획 라. 노사관계 마. 자산관리(차량 포함), 계약업무
행정지원실	2. 재무회계팀 가. 수입·지출 및 자금운영 나. 회계결산 다. 세무업무 라. 퇴직금 및 퇴직금 충당금 관련 업무 마. 수탁·수임연구·위탁연구에 관한 계약 및 정산 업무
	3. 청사관리팀 가. 청사시설, 건축·조경·위생·방화·주차관리 나. 전기·기계 설비(냉·난방 포함) 운영·관리 다.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· 관리 및 시설보안 라. 회의실 관리 및 관련 기기 유지·운영 마. 식당, 매점, 체력단련실, 관사 등 직원 지원시설 관리
	4. 정보전략팀 가. 정보화 전략 수립 나.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다. IT 인프라 구축 및 운영·관리 라.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

# Ⅳ. 감사반 구성

## ○ 감사반 구성 계획

- 내부감사규정 제7조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 구성
- 감사인은 감사반장을 포함하여 총 6인 내외 구성하고, 효율적 감사수행을 위해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
- 감사인은 감사업무에 적합한 내부인원을 선발하되, 외부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외 부전문가 초빙

#### <감사반 구성>



# ∨. 감사방법 및 일정

## 1 서면감사

- ㅇ 감사방법
  - -부서별 감사대상에 대한 중점감사 사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
  - -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 실시
- 추진일정 : 2021. 8. 1 ~ 9. 31

## 2 실지감사

- ○감사방법
  - -서면감사 시 부족한 부분과 직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실지감사 실시
- 추진일정 : 2021. 9. 1. ~ 9. 31.

## **3** │ 감사 대상 기간

○ 대상기간 : 2020. 1. 1. ~ 2020. 12. 31(필요시 2019년도를 포함)

# Ⅵ. 감사추진 절차

#### <감사추진 절차 로드맵>



# Ⅶ.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이행 확인

## □ 2019년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

지 적 사 항	조 치 사 항	처분내역
< <b>파견자 복무관리 부적정&gt;</b> ○연구원「복무규정」및「직원파견규칙」 에 따라 파견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한 파견자 복무관리 업무 철저(경고)	○연구원「복무규정」제20조에 따라 연차휴가 일 수 초과사용 금지(향후 인재개발팀에서 점검 예 정)	경고
< 임직원 행동강령위반 > ○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 인 경우 임직원은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 위반(경고)	○2020년 이후 4촌 이내 친족과 계약을 하는 직무 관련자는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(매월 신고의무 공지)	경고
<정보보안 부적정 > ○개인별로 지급된 업무 전산망 사용자 계정이 다른 직원들과 공유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(주의)	○업무 전산망 아이디 공유 방지를 위하여 아이디 공유 위험성 홍보 및 관련자 주의 조치	주의
<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> ○연구원「연봉외급여지급규칙」을 위반하여 배우자 중복수령('17.12.28 이후) 및 주소 불일치 등으로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연구원 직원들로부터 부당수령액을 회수 조치(주의)	○가족수당 중복수령('17.12.28일 이후분)과 부당수 령 금액 환수완료	주의
<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> ○자녀학비보조수당이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개선필요 (주의)	○내부규정 개정 : 연봉외지급규칙 제13조(자녀학 비보조수당의 지급제한)	주의
< 국외출장 여비사용 부적정 > ○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출장비,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 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(통보)	○관련규정을 전직원에게 공지하여 목적 외 용도 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	통보

# □ 2020년 자체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

지 적 사 항	조 치 사 항	처분내역
< 국외출장 복명 기한 미준수> ○국외출장 복명기한(30일) 지연일수와 건수가 과다한 선임연구위원 000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, 국외출장 담당부서인 총무관리팀은 업무 철저	일)을 초과, 지연 일수 및 건수 과다자에 주의	권고, 주의
<연구보고서 지연 발간(인쇄)> ○연구보고서 발간(인쇄)을 지연한 연구위 원 000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(경고)	○수시연구과제 연구보고서를 약 8개월 지연하여 발간(인쇄)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	경고
<	○법인카드 승인건수는 14,028건 중 업무일 기준 15일을 초과하여 정산된 건수가 1,329건(9.5%)	권고
<대외활동 지연 신고> <ul> <li>대외활동 지연신고 건수가 5회 이상인 선임연구위원 000, 000, 부연구위원 000</li> <li>에 주의 조치하고, 대외활동 담당부서 인 인재개발팀은 대외활동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대외활동 실 태분석을 실시하는 등 관리 철저</li> </ul>	대하여 주의조치, 5회 이하인 직원에 대하여 교	

# Ⅷ. 기타 정기감사에 필요한 사항

- 외부 전문가 초빙(필요 시)
- ㅇ 자체 정기감사 시 내부 인력 지원 요청
- ㅇ 자체 정기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직원 공유 필요

붙임 1. 내부감사규정

- 2. 자체감사반원 일반수칙
- 3. 서면 자료 요구서
- 4. 종합감사일지

# 내부감사규정

제정 2015. 12. 31 제정 2016. 3. 25 2016. 12. 30

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토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 감사(監事)의 직무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원의 자체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감사(監査)"라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.
  - 2. "감사(監事)"란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의해 선임된 비상임 감사를 말한다.
  - 3. "감사인"이란 연구원의 감사실장 그리고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외부전문가 또는 연구원 내부직원을 말한다.
- **제3조(감사의 독립원칙)** 감사(監事)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원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감사범위) 감사(監事)의 감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관계 법령 및 연구원의 정관에 의해 정해진 사항
  - 2.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(이하 "연구회"라 한다)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
  - 3. 국무총리의 지시 또는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
  - 4.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  - 5. 그 밖에 감사(監事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제2장 조직 및 직무

- **제5조(감사조직 등)** ① 원장은 연구원 자체 감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감사(監事)소속 하에 감사조직(이하 "감사실장"이라 한다)을 두고, 감사의 업무를 수행할 감사실을 둔다.
  - ② 감사실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의 규모는 원장이 감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
- 제6조(업무의 한계) ① 감사(監事)는 업무처리의 신속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4조의 감사범위 중 일부를 감사실에 위임할 수 있다. 이 때 위임업무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  - ② 감사실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감사업무 중 중요한 사항은 감사(監事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7조(감사반의 구성 등) ① 감사(監事)는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실

- 장 등으로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, 감사반 중 1명을 감사반장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② 감사(監事)는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또는 연구원 내부직원을 지원받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감사(監事)로부터 감사반의 구성 및 인력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- 제8조(감사인의 자격요건) ① 감사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
  - 2. 회계 및 감사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  - 3. 연구원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
  - 4.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는 자
  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.
  - 1.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- 2. 근무성적이 직원 평균 이하로 불량한 자
- 제9조(감사인의 권한) 감사(監事) 및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
  - 1. 관계 서류 및 물품의 제출 요구
  - 2.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
  - 3. 금고·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
  - 4.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
- 제10조(피감부서의 협조) ① 피감부서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감사(監事) 및 감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.
  - ② 피감부서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고의로 전항을 위반한 경우 감사(監事)는 원장에게 해당 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11조(감사활동비 등) 감사(監事)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사활동비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.
- 제12조(감사인의 의무) 감사(監事) 및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.
  - 2.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3. 관계 법령, 정관, 규정 등에 근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- 4.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력과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감사인의 인사) ① 감사인은 법령 위반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  - ② 감사인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임면과 인사이동 및 근무평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장과 감사가 협의하여 정하다.
  - ③ 감사인의 출장 및 근무상황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의 「복무규정」에 따른다.
- **제14조(감사인의 교육)** 원장은 감사(監事)와 협의하여 감사인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신장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# 제3장 감사(監査) 및 보고 기준

- 제15조(감사의 구분) ① 감사(監査)는 일상감사, 정기감사, 특별감사로 구분한다.
  - ② 일상감사는 제4조에 의한 감사범위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또는 결재 후시행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.
  - ③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 입회하에 실지감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하여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수감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2016.12.30.>
  - ④ 특별감사는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거나 연구회 이사장 또는 원장이 요청하는 경우, 그리고 감사(監事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.
- 제16조(감사계획서 작성 및 감사 시행) ① 감사(監事)는 매 년도 개시 후 30일 내에 정기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 이사장 및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감사(監事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감사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  - 1. 감사대상부서
  - 2. 감사대상업무
  - 3. 감사반의 구성
  - 4. 감사방법과 일정
  - 5.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
  - ③ 감사(監査)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한다.
  - ④ 감사(監事)는 감사시행에 앞서 감사의 시기, 범위, 준비사항 등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감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.
- 제17조(감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) ① 감사(監事)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원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실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내용을, 감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사항을 지체 없이 감사(監事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시정요구 등) 감사(監事)는 감사결과 위법·부당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
  - 1. 통보: 연구원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거나, 징계나 시정 등 선택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
  - 2. 개선: 규정 또는 제도상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 사안으로 규정상 또는 제도상 개선을 요할 경우
  - 3. 주의: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경미한 경우
  - 4. 시정: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
  - 5. 회수 및 환불: 과납, 오납의 경우
  - 6. 경고: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  - 7. 변상: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이 인정될 경우
  - 8. 징계: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9. 고발 또는 수사요청: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제19조(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) ① 원장은 감사(監事)로부터 시정요구 등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(監事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원장 또는 조치를 받은 직원이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15일 이내에 감사(監事)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- ③ 감사(監事)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동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으면 동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.
- 제20조(사고의 보고) 감사(監事)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회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1.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 입건된 사고
  - 2.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
  - 3.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
  - 4. 500만원 이상의 현금·유가증권·물품의 망실·훼손에 해당하는 사고
  - 5. 화재 및 인명피해 사고
  - 6. 범죄 및 비위부정 사고
  - 7.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고

## 제4장 보칙

- 제21조(내부고발자 보호) ① 연구원의 직원은 회계비리 등 연구원 내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감사(監事)에게 신고할 수 있다.
  - ② 감사(監事)는 전항의 신고를 한 직원의 신상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  - ③ 원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그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2조(감사기록의 유지) ① 감사(監事)는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사기록의 보관기간은 연구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  - ② 감사(監事)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기관, 감사목적, 감사기간, 감사내용, 감사자 등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카드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세부지침의 제정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원장이 감사(監事)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규정의 폐지) 내부감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#### 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<붙임 2>

#### 자체감사반원 일반수칙

- 1. (목적) 이 수칙은 감사에 임하는 감사팀 직원 전원이 개별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. (감사준비) 감사실시에 앞서 분장업무에 대한 자료수집 및 착안사항의 연구, 검토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한다.
- 3. (복장 및 용모) 복장 및 용모는 엄숙 단정히 하며 평범하게 한다.
- 4. (언행 및 태도)
  - 가. 감정이나 정실을 일체 배제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한다.
  - 나. 친절하고 겸손하게 언행하여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아니한다.
  - 다. 감사시에는 선입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말고, 감사반장 또는 동료와 상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.
  - 라. 감사를 빌미로 일체의 청탁 또는 압력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- 5. (사담금지 등) 감사장에서는 업무 이외의 사담을 금지하며 전화 등을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.
- 6. (중거서류 징구) 증거서류 등 징구는 필요 최소한도로 한다.
- 7. (소명기회 부여) 감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8. (감사결과보고 및 처리) 감사결과 적출된 사실은 감사반장에게 빠짐없이 보고하여야 하며, 적출사건을 사전 조치케 하거나 그 처리방향을 사전에 설명하지 아니한다.
- 9. (보고서 및 처리안 작성) 보고서 및 처리안은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0. (업무의 보안유지) 감사중 지득한 사실은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.
- 11. (감사기간준수) 감사임무는 최단기간내에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임무가 완료되면 기간에 구 애됨이 없이 즉시 종료한다.
- 12. (관련인등과의 사후 접촉) 적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인이나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.
- 13. (주요적출사항의 중간보고) 감사기간중 적출된 주요사건은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 현지고발조치를 취한다.
- 14. (주요사건의 사전주지) 적출한 사항중 관련직원의 신상과 관련되는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에게 이를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.
- 15. (선물등의 반송) 관련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방문을 받거나 선물등 금품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이를 감사반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며 받은 금품은 제공자에게 반송한다.

# <붙임 3> 서면 자료 요구서

연번	요청일자	요구부서	요구자료 및 구성항목	비고

# <붙임 4> 종합감사일지

연번	일자	해당부서	감사내역	지적사항 및 조치사항

# <붙임 5> 종합감사보고서

1. 감사개요							
감 사 일 정							
감사반편성							
주요감사대상업무							
2. 감사결과							
대상업무	지적사항	조치결과	담당부서 및 책임자				
3.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개선실적							
대상업무	운 영 개 선 실 적						
4. 수범직원명단							
소속 및 직급	소속 및 직급 성 명		수 범 내 용				
5. 종합검토의견							